

[별표 1의2] <신설 2008.9.18>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규 모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매 표 소	부지면적 1백 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안 전 시 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조 경 시 설		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휴양 및 편익시설	야영장	부지면적 6천 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부지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
교통· 운송시설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	폭 12미터 이하
	궤도·삭도	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선착장	부지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
공원사업		공원구역 안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